

제 421 호

1973.12.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 례

이 연구보존본지는 마...
 편집으로 ...
 서울특별시의 시민...

◎ 조 례

- 제 808 호 : 서울특별시 공업용급 수조례 개정조례 3
- 제 809 호 :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 10
- 제 810 호 :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제장 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10
- 제 811 호 : 장관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중 개정조례 11

◎ 고 시

- 제 19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과일부변경및지적승인 11
- 제 195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및도로) 지적승인 13
- 제 196 호 : 도시계획 (주택개발을위한채개발구역) 일부지적승인고시 14
- 제 197 호 : 예산고시 15
- 제 19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5
- 제 19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및지적승인 17
- 제 200 호 :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및지하상가) 결정및지적승인 18

◎ 공 고

- 제 38 호 : 갈현동청사이전공고 19
- 제 92 호 : 상계 1동이전공고 19
- 제 234 호 : 환지계획변경을위한공람공고 19
- 제 235 호 : 주택개발을위한채개발사업실시계획공람공고 20

◎ 사 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1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 제 808 호

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
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업용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 조 및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 45 조와 지방자치법 제 1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도의 요금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기타 공급조건등 공업용 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양수기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중 양수기 이하에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급수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 3 조 (급수의범위) ①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급수는 산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내의 산업시설자에게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며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장치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케 할 수 있다.

제 4 조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등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급수장치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2.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변경되었거나 그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3.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4.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5 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는 그 시설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

에 부수하여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권에 발생한 의무에 이를 승계한다.

제 6 조 (급수장치의 관리책임) ① 급수사용자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오염 및 누수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급수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들의 책임으로 한다.

제 7 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신청에 있어 시장은 그 인래관계인의 동의서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공사의 시행)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양수기 이하의 장치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상수도 시공업자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소요자로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전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1. 자체 검사수수료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5원
- 2. 준공검사 수수료 1건에 대하여 500원

제 9 조 (공사비의 부담) ①공사 및 설계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장치를 양수기 이전의 모든 시설물과 양수기는 준공과 동시에 시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의무는 신청인이 진다.

제 10 조 (공사비의 산출) ①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은 재료비, 운반비, 노무비, 사무비, 도로복구비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 11 조 (가입금)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 2 호에 의한 가입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비, 가입금의 선납) ①제 9 조 및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와 가입금은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에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 13 조 (급수장치의 위치변경) ①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으로 배수관의 이전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위치 변경 또는 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이 신청이 없더라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 조 (양수기의 보호관리) ①급수 사용자등은 양수기를 매몰하거나 양수기의 설치 장소에 점점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급수사용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배만히하여 양수기를 망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급수사용료) ①급수사용료는 제 3 조에 규정한 급수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급수사용료는 별표 제 1 호의 공업용수 사용료 요율표에 의한다.

제 16 조 (급수사용료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개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양수기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거나 양수기의 고장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7 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급수 사용료는 매월분을 익월 20 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

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 18 조 (양수기의 고장) ①급수사용자등은 양수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검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 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③전항의 오차가 없거나 또는 100분의 8 이내인 때에는 다음의 검정수수료를 청구인으로 부터 징수하고 급수량을 정정하지 아니한다.

- 1. 구경 50% 양수기 1개 1회 300 원
- 2. 구경 75% 이상의 양수기 1개 1회 1,000 원

제 19 조 (급수의 제한 또는 정지)

①시장은 재해 또는 급수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제한 또는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급수장치등의 검사)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수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21 조 (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자.
- 2. 급수를 도용한자.
- 3.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자.

4.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자.

5. 정수처분된 수전을 무단 개전한자.

6. 공업용수를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판매한자.

7. 제 14 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8.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과 지시명령을 위반한자.

제 22 조 (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제 21 조 제 2호 내지 제 5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00 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 23 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와 그 가산금 수수료 및 기타

<p>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 2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1973년 2월 1일 이후</p>	<p>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공업용수도 의 급수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③ (동전) 1973년 2월 1일 이후 이 조례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는 자가 납부한 가입금이 이 조례 제 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징한다.</p>
---	---

별표제 1 호

공업용수 사용료요율표

구분 구역별	1 건 1 개월 기본요금		기본량초과사용요금
	기본량	요금	
시 내	신청량	1㎥당 4원	신청량초과 1㎥당 10원
시 외	〃	1㎥당 5원	신청량초과 1㎥당 15원

별표제 2 호

가 입 금 명 세

신 청 수 량	신 규 가 입 자	당 초 가 입 자
100	473,434	364,165
300	1,420,302	1,092,496
500	2,367,171	1,820,828
700	3,314,040	2,549,159
1,000	4,734,343	3,641,656
1,500	7,101,514	5,462,484
2,000	9,468,686	7,283,313
2,500	11,835,857	9,104,141
3,000	14,203,029	10,924,969
4,000	18,937,372	14,566,626
5,000	23,671,715	18,208,283
6,000	28,406,058	21,849,939
7,000	33,140,401	25,491,596
8,000	37,874,744	29,133,252
9,000	42,609,087	32,774,909
10,000	47,343,430	36,416,566
12,000	56,812,116	43,699,879
15,000	71,015,145	54,624,849
20,000	94,686,860	72,833,132

※당초가입자 : 공업용수도공사의 발족당시 투자자를 말한다.

신규가입자 : " 발족이후 가입자를 말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2. 15

서울특별시 시장

◎서울특별시조례 제 809 호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0 조 제 1 항 및 제 86 조 제 1 항중 " 4월 1일부터 4월말일까지" 를 각각 " 5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묘지및 장제장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2. 15

서울특별시 시장

◎서울특별시조례 제 810 호

서울특별시묘지및 장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묘지및 장제장 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사용허가및 사용료) ① 묘지및 장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서울특별시장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묘지및 장제장의 사용료와 공원묘지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묘지의사용제한) 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묘지 : 6.6㎡ 이상 19.8㎡ 이 내 (다만합장인 경우는 25이내)
- 2. 공원묘지 : 입석형 3.3㎡, 반봉분형 8.25㎡

" 별표제 2 호 " 를 " 별표제 3 호 " 로 하고 " 별표제 1 호 " 및 " 별표제 2 호 "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제 1 호 묘지사용료

1. 일반묘지

1 등지 3.3㎡에 대하여 60원

2 등지 3.3㎡에 대하여 40원

2. 공원묘지

입석형 1기당 9,000원

반봉분형 1기당 22,500원

별표제 2 호 공원묘지 관리비

1. 입석형 1기당 1,000원

2. 반봉분형 1기당 2,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장관소유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2. 1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 제 811호

장관소유자동차의과세면제에 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

장관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중 "장관"을 "군장성"으로 한다.

부칙제 2 항중 "1973년 12월 31일"을 "197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과일부 변경및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다음과같이 결정(일부변경)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호(73. 4. 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12. 11

서울특별시장

가. 로선조서(별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3	501	6	372	신설동 92-46	신설 114-43	
"	"	3	502	6	23	" 청계천	신설 92 - 26	
"	"	3	503	6	28	용두동 "	용두 251 - 72	
"	"	3	504	6	16	상왕십리동 12-17	상왕십리청계천	

구분	등급	류별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3	505	6	260	상왕십리 8-5	상왕십리 15-1
"	"	3	506	6	22	" 343-6	" 청계천
"	"	3	507	6	333	" 286-32	" 8-6
"	"	3	508	6	20	" 303-34	" 청계천
"	"	3	509	6	25	용두동 128-391	"
"	"	3	510	6	15	홍익동 252-56	"
"	"	3	511	6	22	홍익동 441-1	"
"	"	3	512	6	15	마장동 456-1	"
"	"	3	513	6	180	용두동 251-86	용두동 251-19
"	"	2	501	8	180	용두동 251-86	"
"	"	2	502	8	215	" 129-376	용두동 129-412
"	"	2	503	8	180	" 129-4	" 129-473
"	"	2	504	8	703	마장동 470-1	홍익 252-14
"	"	2	505	8	20	" 480-1	청계천
"	"	2		7	17	용산동 5가 17-30	용산동 5가 19-554
기정	"	3	301	6	1,156	능동 432-15	능동 256-4
변경	"	3	301	6	1,138	"	"
신설	"	3	302	6	836	능동 80-49	" 76-3
"	"	3	303	6	33	" 76-2	" 76-2
"	"	3	304	6	114	" 77-49	" 산 3-8
"	"	3	305	6	126	" 55-3	" 6-19
"	"	3	306	6	140	" 63-5	" 6-29
"	"	3	307	6	160	" 60-1	" 41-1
"	"	3	308	6	142	" 50-15	" 63-4
"	"	3	309	6	60	" 80-29	" 65-4
"	"	3	310	6	110	" 69	" 58-3
"	"	3	311	6	64	" 393	" 397-2
"	"	3	312	6	106	" 172	" 177-3
"	"	3	313	6	120	" 197-5	" 369-2
"	"	2	301	8	103	" 197-4	" 232-2

별첨 : 도면포시와갈음 (도면생략) 도면은서울특별시청및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95 호
 도시계획시설 (광장및 도로)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445호(73.11.13)로
 변경결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광장및 도로) 의 지적을 다음과같이 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
 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
 가 도로 지적 승인조서.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12. 13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27	35	1,800	봉천동(광로 19)		신림동 (대 3-48)			
변경	"	1	27	35	1,700	"		신림동(제40호광장)		광장신설로	연장축소
기정	"	3	48	25	5,246	대방동(대 3-18)		신림동			
변경	"	3	48	25	4,800	"		신림동(제40호광장)		"	
기정	"	2	44	30	1,600	봉천동(광로 19)		신림동			
변경	"	2	44	30	1,600	"		신림동(서울대학교)		위치 변경	
신설	중로	1	146	20	20	봉천동 (대 2-44)		봉천동낙성대정분			

나. 광장 지적 승인조서

구	분	번	호	시	설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40		교	통	광	장	서울대	학교	앞	광	장	35,710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및 관악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96 호

도시계획(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구역)
일부지적승인고시

1. 건설부고시제 470 호 (73.12.1) 로 지정된 도시계획(주택개량을위한 재개발구역) 중 일부지적 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동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개량 2 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12. 1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주택개량을위한 재개발구역) 조서

번호	구역명칭	위치	면적	비고
16 (3-7)	승인구역	동대문구승인동 58 번지일대	69,500㎡	주택개량을위한 재개발 구역
41 (4-7)	금호제 2 구역	성동구금호동 4 가산 7, 응봉동산 7 번지일대	141,600	"
64 (5-6-1)	돈암제 3 구역	성북구돈암동 산 6, 9, 11, 80 번지일대	262,700	"
103 (6-28)	북아현제 2 구역	서대문구북아현 3 동 113, 충정로산 6 번지일대	15,200	"
131 (7-4)	아현제 2 구역	마포구아현 2 동 596 번지일대	129,000	"
143 (8-9)	서빙고제 1 구역	용산구서빙고동 187-2 번지일대	19,900	"
153 (9-2)	혹석제 2 구역	관악구혹석동 산 88 번지일대	75,300	"
189 (9-17)	고척구역	영등포구고척동 62 번지 일대	19,000	"
82 (6-7-1)	홍은제 5 구역	서대문구홍은 1 동 71, 113 번지일대	228,500	"
119 (6-46)	현저제 3 구역	서대문구현저 1 동 746 번지일대	141,900	"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당시주택국개량 2 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97 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3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제3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1973.12.11.

서울특별시

회 계 별

예 산 액

총 계	80,761,171,000 원
일반회계	45,824,069,000 "
특별회계	34,937,102,000 "
주 택 비	2,595,537,000 "
토지구획정리비	6,086,395,000 "
지하철건설비	12,974,659,000 "
하수처리장비	254,168,000 "
건설자재생산비	408,651,000 "
유료도로비	485,502,000 "
시민회관비	191,949,000 "
재해구호비	62,298,000 "
운수사업비	1,681,105,000 "
수도사업비	10,196,838,000 "

◎서울특별시고시제 198 호

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 제26조 및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209 호(70.5.11)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194 호(73.12.12)로 계획결정된 서울특별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하수과와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12.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청계천 (제 2 청계교 - 마장교간) 복개공사 (및 소도로공사)

3. 사업의 규모
 복 개 폭 18미터 연장 770 미터
 소도로 폭 6미터 연장 65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72.10.5 ~ 73.12.30

6. 사용또는수용할 토지소재지 : 별첨 (조서)
7. 소유자와 소유원이 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8. 도시계획법 제 63 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귀속 재산 (별첨)

토 지 조 서 (서울시로 귀속될 재산)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동대문구 신설동	92-34	도	10,148.8	신설동 92-66	도로	149.3			
	"	"	"	"	" 92-67	"	226.4			
	"	"	"	"	" 92-68	"	76			
	"	92-44	"	356.3	" 92-69	"	98.2			

인 가 증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로 (하천복개공사 및 소도로)
 복 개 폭 18미터 연장 770 미터
 소도로 폭 6미터 연장 650 미터
3.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198호
5. 사업기간 : 72.10.5 - 73.12.31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건물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원이 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
 8. 도시계획법 제 83 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귀속 재산(별첨)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10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별첨 설계조서와 같이 인정함.

1973.12.17

서울특별시장

인카조건

1. 사업실시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계약설계도서(평면도)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19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1. 당시관내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3.12.

서울특별시장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85	4	33	북아현 1-117	북아현 1-1284	
폐지	"	"	"	"	"	"	"	폐 지
기정	소로	4	140	4	240	홍제동 114	홍제동 119	
변경	"	"	"	"	"	"	"	위치일부변경
기정	소로	4	141	4	120	" 121	홍제동 124	
변경	"	"	"	"	"	"	"	"
기정	소로	4	95	4	110	천연동 126-30	천연동 127-136	
변경	"	"	"	"	"	"	" 127-41	"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293	6	120	천연동 127-9	천연동 127-151	
변경	"	"	"	"	125	"	"	위치일부변경
기정	소로	4	63	4	77	북아현 2 지구 85	북아현 2 지구 97	
변경	"	"	"	"	82	" " 82	"	"
기정	소로	3	296	6	345	홍제동 32-2	홍제동 64-5	
변경	"	"	"	"	"	"	"	"
기정	소로	3	301	6	190	홍제동 77	홍제동 57-1	
변경	"	"	"	"	185	"	"	"
기정	소로	3	298	6	210	홍제동 64-48	홍제동 79-73	
변경	"	"	"	"	240	"	"	"
기정	소로	4	2	4	40	하왕십리동 1000-138	하왕십리동 1000-121	
변경	"	"	"	"	46	"	" 1000-138	노선위치변경

별첨 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 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 및 지하상가)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지하도 및 지하상가)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가. 시설조서

(73.4.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3.12.17.

서울특별시장

명 칭	규 모			시 점	종 점	비 고
	지하도	상가	계			
청량리 광장지하도 및 지하상가	620	275	895	지하철청량리정류장	대왕코너	
동대문광장지하도	1,178		1,178	지하철동대문	" 동대문종합시장	

나. 시설조서					
명칭	폭	연장	위치	비고	
인현지하상가지하도	3.2미터	11미터	인현동 135의 13 앞 (도로)	인현지하상가상품 반출입로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공 고

◎ 은 공 고 제 38 호

관하 갈현동 청사를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기 공고한다.

1973. 12. 16

은평출장소장 이 상 목
다 음

전소재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갈현동 435 - 1

이전소재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갈현동 450 - 25

◎ 도 공 고 제 92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제1동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기 공고함

1973. 12. 1

도봉구청장 박 중 문
다 음

전소재지 : 서울특별시도봉구상계동

1114번지

이전소재지 : 서울특별시도봉구상계동 1112번지의 10

이전년월일 : 1973년 12월 1일

◎ 서울특별시공고제 234 호

환지 계획변경을 위한공람공고

1.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와 동법제 55 조 및 동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2. 환지 계획변경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있음.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 수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73. 12. 12

서울특별시 장

침부 : 도면 및 조서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235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제 470 호 (73.12.1)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
로 지정고시된 구역중 '74년도사
업시행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개
량 2 과에 비치하며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공고로 통지에
같음합니다.

1973. 12. 13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가. 사업명 : 동대문구 충인구역의 9 개구역재개발사업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다.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가. '74 시행구역조서

번 호	구 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16(34-7)	충인구역	동대문구충인동 58 번지일대	69,500㎡	주택개량을위 한재개발사업
41(4-7)	금호제 2 구역	성동구금호동 4 가산 7 , 응봉동 산 7 번지일대	141,600㎡	"
64(5-61)	돈암제 3 구역	성북구돈암동산 6, 9, 11, 80번지 일대	282,700"	"
103(6-28)	북아현제 2 구역	서대문구북아현 3 동 113 , 충정 로산 6 번지일대	15200"	"
131(7-4)	아현제 2 구역	마포구아현 2 동 596 번지일대	129,000"	"
143(8-9)	서빙고제 1 구역	용산구서빙고동 187-2 번지일대	19,900"	"
153(9-2)	혹석제 2 구역	관악구혹석동산 38 번지일대	75300"	"
189(9-17)	고척구역	영등포구고척동 62 번지일대	19,000"	"
82(6-7-1)	홍은제 5 구역	서대문구홍은 1 동 77, 113 번지일대	228,500"	"
119(6-46)	현저제 3 구역	서대문구현저 1 동 746 번지일대	141,900"	"

사 령

◎ 1973.11.30

영등포구 농림기자 국 응 설
지방농림기사에 임함.
11 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 1973.12. 1

경북포항시 지방행정 최 상 득
서 기 보
인사 214-3046 (73.11.26)
서울특별시 전입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

◎ 1973.12. 6

운동장운영관 지방행정 박 준 영
사 무 관
운동장 운영 담당관에 임함.

◎ 1973.12.10

순찰담당관 지방행정 우 대 영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 1973.12.11

업 무 과 지방행정 우 충 식
주 지방행정 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관광운수국 서 기 관 김 영 근
관 광 과 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1973년 12월 11일

대 통 령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서 기 관 김 영 근
교 수 부
지방서기관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 1973.12.13

동대문구 지방행정 조 영 덕
서 기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이 종 식
서 기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성 북 구 지방행정 이 후 영
수 도 사 업 소 서 기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p>도 봉 구 지방행정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주 병 인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서기 오 종 덕</p>
<p>도 봉 구 지방행정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현 성 국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마 포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정 용 복</p>
<p>도 봉 구 지방행정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이 동 수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마 포 구 지방행정 서기 이 부 영</p>
<p>도 봉 구 지방행정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김 도 제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도 봉 구 지방행정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박 재 신 © 1973.12.15 이 남 술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임함.</p>
<p>도 봉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김 준 식 1 호봉을 급함. 죽도수원지사사무소 근무를 명함. 방 효 복</p>
<p>도 봉 구 지방행정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장 덕 구 지방치적기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송구 근무를 명함.</p>
<p>도 봉 구 지방행정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김 영 일</p>

<p>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박 규 신 1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관악구 근무를 명함.</p>	<p>박 관 수 지방기계기원보시보에 임함.</p>
<p>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유 재 선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p>
<p>관악구 근무를 명함.</p>	<p>강 을 순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p>
<p>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조 성 복 2호봉을 급함. 소녀직업보도소 근무를 명함.</p>
<p>용산구 근무를 명함.</p>	<p>이 영 오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손 성 천 1호봉을 급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성동구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이 형 숙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이 남 용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최 은 숙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p>	<p>김 춘 경 1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p>

<p>동부건설 지방토목 사업소 기사보 이강수</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성동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보 이경철</p> <p>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거하여 견책에 처함.</p> <p>중부시립병원 지방약무 기사보 서만홍</p> <p>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봉 6월에 처함.</p> <p>서대문병원 지방보건 기사보 정완오</p> <p>동부병원파견 (74.5.31 까지) 근무를 명함.</p> <p>서울운동장 지방전기 기사보 김상운</p> <p>서울운동장 기술담당 관에 보함.</p> <p>주택건설과 지방행정 사무계장 사무관 박승만</p> <p>통계과 통계기준제장에 보함.</p> <p>개량 2 과 지방행정 관리계장 사무관 최종호</p> <p>주택건설과 사무계장에 보함.</p> <p>개량 1 과 지방행정 사무관 사무관 윤치수</p> <p>개량 2 과 관리계장에 보함.</p> <p>종로구 지방행정 산업과장 사무관 강철희</p> <p>마포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보함.</p>	<p>용산구 지방행정 산업과장 사무관 전인권</p> <p>공무원교육원 교수부에 보함.</p> <p>공무원교육원 부이사관 교수부장 이상복</p> <p>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지방행정 사무관시보에 임함.</p> <p>1 호봉을 급함.</p> <p>종로구 사회과장에 보함.</p> <p>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p> <p>6 호봉을 급함.</p> <p>서울특별시종로구 산업과장에 보함.</p> <p>시립오류부녀 지방간호 보호지도소 기원보 박준옥</p> <p>수에 원 과 지방토목 기사보 윤택진</p> <p>환경과 지방보건 기사보 박순봉</p> <p>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 1973.12.17</p> <p>© 1973.12.18</p>

중로구보건소	지방보건사	한충현	1973.12.20
환경과	근무를 명함.		육건수
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사	전공현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구의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사	이철	최동준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전기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사	홍재창	
중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